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도난 문화재를 찾읍시다** 경찰청 후원

성보 도난방지 법제화 '금물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지정 문화재에 한해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광위에 상정돼 법안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89년 도난됐던 충남 부여 무량사 금동보살좌상(충남도 유형문화재 100호).

도난 문화재에 대한 민법상 선의취득 적용 배제와 은닉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를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이 여야 의원입법으로 발의·상정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심의(다음주 예상을) 기다리고 있다. 은닉 및 보관 행위의 발견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문화재청이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도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문광위는 의원입법안과 정부안에 대해 함께 심의를 벌여 의원입법 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12월 둘째 주 예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선의취득 배제'와 '공소시효 연장'은 조계종 등 불교계에서 끊임없이 그 필요성을 제기해 왔던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찰소장 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방책을 마련하는 셈이다. 그 동안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이 몇 차례 추진됐으나 법무부 등의 심의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로 번번이 부류돼 왔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민법상 선의취득 적용 배제 신설 =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 31명이 발의해 문광위 법안소위에 상정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도난 당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민법 제246조 및 2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소유권 취득에 관한 특례 조항(동법 제60조의 신설)을 담고 있다. 이미경 의원은 "선의로 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민법상 선의취득 제도를 악용해 도난범이 도난 문화재를 일정한 기간(2년)이 지나 처분하는 경우, 원 소유자가 누군지 알면서든 원 소유자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 소유로 등록된 문화재는 현행법상으로도 선의취득 적용을 받지 않는다.

비지정 문화재 일제조사 재평가 통해 지정 확대

도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 적용 배제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에서 동산문화재를 제외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 때문에 법 제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8월 조계종에서 개최한 '사찰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책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지정문화재에 한해 선의취득 적용 예외 규정 신설의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지정문화재의 경우, 사려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문화재 지정과 도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동산 문화재의 유형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적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의 해당 여부와 도난 사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고,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동산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선의취득 제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경 의원은 "이 규정이 도난 범들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 도난 방지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내년부터 문화재청과 조계종 총무원이 불교문화재 일제 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이를 통해 비지정문화재를 재평가하고 문화재 지정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닉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 한나라당 고홍길 의원 등 41명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문화재청 안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은 은닉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이다. 은닉 및 보관 행위를 질책, 도굴 등과 별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은닉 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게 하거나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함으로써 사실상 공소시효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에도 문화재청이 이 같은 내용을 입법 예고했으나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 대법원 판례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앞으로 남은 심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 고홍길 의원은 "문화재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서 이를 유통시킬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며 "은닉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은 법률 해석상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 기간은 정해져 있되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것이므로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심의와 전체 표결을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a.com

"석굴암 전실 직선형 아닌 절곡형"

"현재 팔부신장상 배치 원래와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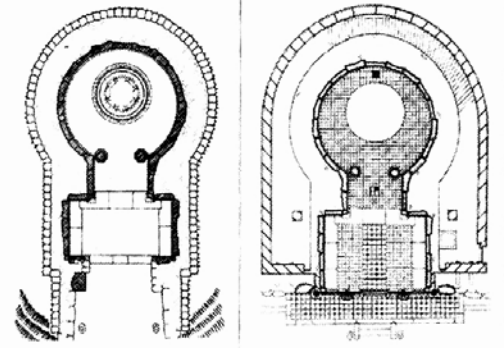
이종학 씨 사진공개

경주 석굴암 전실의 팔부신장상이 현재 모습과는 달리 머리 양 가장자리가 절곡형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진이 발견됐다. 이 사진은 석굴암 전실 세부 모습을 찍은 가장 오래된 사진 자료로, 전실 팔부신장상의 배치가 지그재그 전개형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이종학 사운연구소장은 1909년에 석굴암 전실 왼쪽 측면(남쪽)의 팔부신장상 배치를 찍은 사진을 22일 공개했다. 이 소장이 최근 일 본에서 입수한 <조선미술대관>에 실린 이 사진은 팔부신장상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현재의 석굴암 남쪽 전실 배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1964년 복원된 현재의 석굴암 전실 배치는 서쪽 양벽의 금강역사상에 뒤이은 들머리의 남북쪽 두 벽에 각각 4구씩 신장입상을 돌돌새김해 서로 마주보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남쪽편 사진에는 현재 배치처럼 첫째 신장상 아수라가 놓여야 할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들로 가지런히 쌓은 기단이 앞쪽으로 튀어 나와 있어, 아수라상이 원래는 서쪽으로 금강역사상을 마주보며 배치했을 가능성을 짐작한다.

이에 대해 문명대(동국대) 교수는 "사진을 볼 때 서쪽으로 꺾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미 무너져 매몰된 후의 사진이기 때문에 팔부신장상 배치가 굴곡형인지 전개형인지 단



◇일제 때 중수한 석굴암평면도(좌)와 현재의 석굴암평면도(우).

정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석굴암은 일제 침략기인 1912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세 차례 중수된 후 60년대 재복원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복원을 지휘한 황수영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절곡형 배치를 현재와 같은 직선형 배치로 고치면서 "일제가 수리할 때 잘못 배치해 배치를 새롭게 고쳤다"고 자신의 저서<석굴암>에서 밝혀 놓고 있다.

권형진 기자

"운주사 천불천탑 1270년경 원나라 조성"

소재구 씨 "다탑 조성 몽골 관습" 주장

'다탑봉(多塔峰)'의 천불천탑(千佛千塔)으로 알려진 전남 화순 운주사 천불천탑은 과연 누가, 언제, 무엇 때문에 조성한 것일까? 고려를 침략한 원나라 군부가 운주사를 고려 삼벌초군에 맞서기 위한 군사 거점으로 삼으면서, 원나라 병사들의 무운을 빌기 위해 천

불천탑을 조성했다"는 주장을 폈다. 운주사 천불천탑은 운주사를 둘러싼 계곡에 18기의 석탑과 72기의 석조불상이 밀집해 있는데, 소 연구관은 바로 이 점이 한국의 전통적인 조탑(造塔)·조불(造佛) 의식에서 벗어나며 이점이 바로 조성 주체가 원나라 군부임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형진 기자



경주 천관사터

'天' 자명 기와 출토

김유신 장군이 기생 천관녀를 기러 세웠다는 경주 남산 천관사터(사적 311호)에서 '천(天)'자가 새겨진 명문기와가 발견됐다.

지난해 5월부터 천관사터 발굴 조사를 맡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소장 최명식은 최근 발굴 성과를 공개하고 '천'자가 들어간 기와와 소형 금동불상 등 유물 280점과 탑터와 금당터 등의 유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천'자가 들어간 명문 기와는 처음 출토되는 것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오릉 동쪽에 있다(在五陵東)'는 기록이 전부였던 천관사의 위치를 밝혀줄 결정적 증거로 보인다.

기단부와 일부 탑재만 남아 있던 석탑이 방향의 2중 기단 위에 팔각형 탑신을 올린,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이형(異形) 석탑임도 함께 밝혀졌다.

권형진 기자

'고도보존법' 다시 추진

김일윤 의원 등 159명 국회 상정

지난 97년과 99년 추진되다 무산됐던 '고도보존법' 제정이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 김일윤·고홍길·남경필·정진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회의원 159명은 최근 '고도(古都) 보존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상정해,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김일윤 의원 등은 "현행 문화재 보호법은 문화 유적지나 문화재의 개별적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역사적 문화환경의 포괄적 보호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전제하고 "문화유적 보존과 함께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장해 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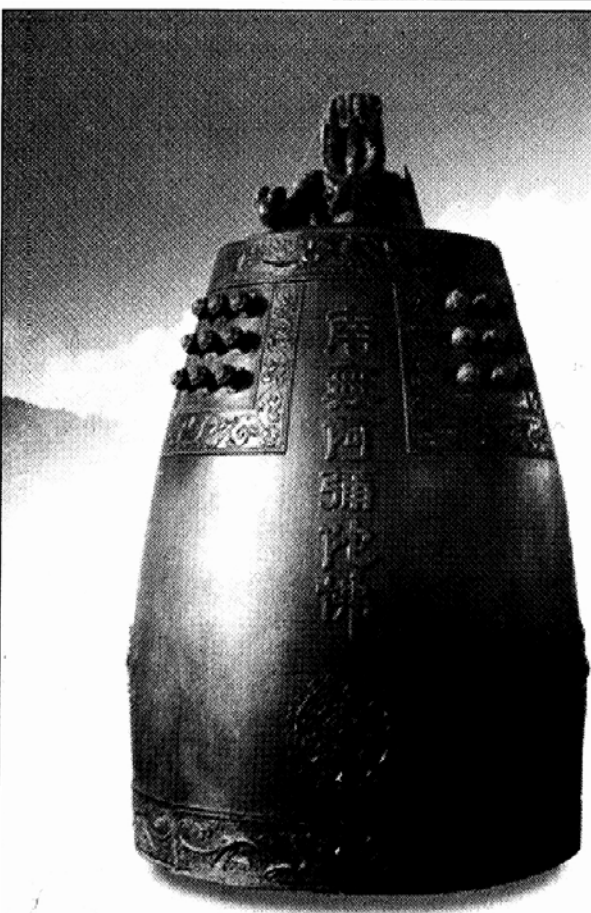
고도보존법은 개별 문화재를 대상으로 삼는 현행 문화재보호법과는 달리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던 옛 도시 자체와 주변 환경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보존 및 정비예산의 전액 국가 부담, 보존·정비 목적 이외의 국공유지 매각 금지,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형진 기자

탈레반 문화재 파괴 석탑 등 2천 7500여점

지난 3월 아프간 바미얀 석불 파괴전부터 탈레반에 의한 대규모 유물 파괴가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탈레반이 지난해부터 카불 국립 박물관의 미술품 2천750여 점을 파괴했다고 22일 전했다.

탈레반의 이같은 문화재 파괴 작업은 지난 2월 26일 탈레반 지도자 오마르가 모든 석불과 불화를 우상숭배라며 파괴 명령을 내린 이후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아프간의 유물들을 보존해온 카불박물관은 아프간 반군사이의 최전선이 되면서 점령군이 바뀔 때마다 유물이 대규모로 약탈, 파괴됐다. 권형진 기자 snocopy@buddhapa.com



중량 3,300관

가야산 범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